

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 (의안번호 제861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. 6. 14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04. 6. 15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4. 6. 18 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-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,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,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재도를 개선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가. 법적근거인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을 명시(안 제1조)
- 나.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됨(안 제3조의 2)
- 다.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, 2005년 7월 1일 부터는 전면 실시 함.(안 제16조의 2)
- 라.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(11월-2월)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, 토요일전일근무제를 폐지(안 제13조, 제16조의 2)
- 마.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~2일 축소함.(안 제18조)

- 바.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.(안 별표3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,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며,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 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
-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있으며,
- 조례안 제3조의 2(비밀엄수) 조항은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라고 공직자의 비밀엄수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나, 지난 6. 15 하위법령인 대통령령(국가공무원복무규정) 개정에 따라 그동안 세부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완적 차원에서 신설된 것임.
- 조례안 제13조, 제16조의 2 및 제18조제1항은 토요일 휴무를 2004. 7. 1부터 월2회, 2005. 7. 1부터는 전면실시함에 따른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동절기(11월-2월)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,
- 2006. 1. 1부터 공무원 연가 일수가 재직기간 3년을 기준으로 3년미만은 1일, 3년이상은 2일씩 각각 축소되며,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과 상위법령(대통령령)에 부합되게 고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보완하여 개정코자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- 조례안 제3조의2 비밀엄수, 제13조 근무시간 중 동절기(11월-2월) 퇴근 1시간 연장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조례안 제3조의2 비밀엄수 조항 중 제1호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나, 2호 내지 4호는 범위가 너무 넓다고 보는데?
- 답 : 경상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(안)과 행정자치부 개정조례 표준(안)에 부합되게 개정코자 함.
- 문 : 공무원 동절기 근무시간 중 퇴근을 오후 5시에서 6시로 1시간 연장하는 것은 공무원 사기양양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?
- 답 : 다른 기관·단체에서는 동절기에 퇴근시간을 오후 6시에 하고 있으며, 경상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(안)에 맞게 개정코자 함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4. 6. 18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